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 일 부

목 차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5
1. 남북교류협력 개황	5
2. 남북교역 제도 발전	8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8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10
다.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12
라. 남북교역 여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17
II.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26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26
가. 추진현황	26
나. 교역형태품목	29
2. 위탁가공교역 현황	32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34
가. 개 황	34
나. 남북간 선박운행	35
다. 남북간 자동차운행	37
라. 남북간 항공기운행	38
III. 남북교역 절차	39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39

가. 북한주민접촉	39
나. 남북한 왕래	44
2. 남북교역	52
가. 남북교역의 개념	52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53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54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56
마. 위탁가공교역	71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73
가. 기금대출 개요	73
나. 기금대출 대상	74
다. ~사. 지원 세부내역	75

<부록 1>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87
1. 북한주민접촉	87
2. 북한 및 남한 방문	99
3. 교역물품 반출입	104
4. 수송장비 운행	112
■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	120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120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131
■ 자금대출 신청서	144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47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47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9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1
4.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84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86
6.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196
7.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206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211
9.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225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33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40
12. 남북협력기금법	244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48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54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56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85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316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16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24
3. 남북해운 합의서	332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340

<부록 3>

■ 남북교역의 약사 347

I. 남북교류협력 기반형성

1. 남북교류협력 개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마소 대결이라는 양극구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남북한도 서로 상대방을 정치·군사·이념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들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냉전의 구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키게 되었다.

즉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북한 갈등관계의 청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

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 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요하는품목’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 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

체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4월에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6월에는 기계·장치·설비의 대북반출승인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205개 → 178개)함으로써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대상품목의 폭을 크게 넓혔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남북교역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위탁가공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99. 8. 16)

이어 10월에는 대북 투자 및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5개항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은 본격적인 시범단지 가동과 본단지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으며,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개성 및 백두산 지역으로 관광을 확대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

남북교역은 그동안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분야로 점차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교역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 남북교역 제도 발전

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한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동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의 방북이 허용되는 한편 남북간 협력사업(자) 승인 등이 구체화되는 등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 경제협 활성화 조치('94.11.8)>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남북교역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무역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남북교역이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역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품목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을 그대로 남북교역 품목 구분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동 고시의 개정으로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제고되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개정('95.1.3)>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 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 통일부장관의 승인 필요

1998년 4월 30일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8.4.30)>

□ 기본방향

-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

□ 조치내용

① 접촉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연장(1년 → 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 축 : 현행 20일 → 15일
- 방 북 : 현행 30일 → 20일

② 교역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희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③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기존 500 ~ 1,000만불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다.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제도적인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보장합의서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고,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및 8월 20일 발효통지문 교환을 거쳐 발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보장 합의서

-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
 - 아울러 투자 및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
-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
-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

②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
-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

-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세
-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③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
-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 상황을 협의하여 정함.

④ 청산결제 합의서

-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
-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한 후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되,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선정
 -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음.
-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처리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 등 협의

한편 남북교역 규모 확대에 따라 남북은 원산지 위장 반입 방지와 교역질서 확립을 통해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년 9월 29일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남북사이에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합의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1년
-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
 -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2005년 8월에는 남북간 육로 및 해상을 통한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및 열차 운행에 관한 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의 본격적 추진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 등 모두 9개합의서를 국회 동의후 북한과의 문본교환을 통해 발효시켰다.

이로써 남북경협이 제도화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라. 남북교역 여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정부는 1989년 남북교역 시작 이래 경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승인대상품목 조정, 남북왕래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998년 6월에는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2005년 5월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15년만에 개정하였다. 남북간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문화하면서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교역과 관련된 제도 변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8.6.19)>

- ①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100만불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승인없이 반출입

- ③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
- ④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하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정부는 북한물품의 부정 반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교역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피해 구제, 방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거래형태(무상)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요하게 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99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9.8.16)〉

①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승인대상품목으로 분류
·포켓용 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및 없는 것)
·벗짚
·꽃게(산것·신선 또는 냉장 및 냉동)
 - 북한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민어’는 반입승인대상품목에서 삭제
-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78개에서 182개로 늘어남.

②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없이도 반출입 가능

③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북한 물품반입승인신청서’ 등 4종의 서식을 제정

④ 용어 및 조문 정리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대해 새로이 구분 정리

또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코자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2000.9.28)〉

o 반입승인대상 품목의 조정

- 국내산업피해 구제조치(긴급관세 30% → 315%)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냉동마늘 등에 대하여 반입승인대상물품으로 분류

·냉동마늘(0710.80.2000)

·초산조제마늘(2001.90.9060)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 고시)의 개정에 따라 반입승인대상물품중 일부를 개정

·마늘(0703.20.0000) → 탈피한 것(0703.20.1000)

기 타(0703.20.9000)

※ 별표 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수는 182개에서 185개로 됨.

남북관계 개선 및 교역증대 등으로 인한 교류협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1년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역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교역과 관련한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다.

① 북한방문 유효기간의 연장

- 현행 1년 6개월 이내의 북한 방문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② 수시방북 절차의 간소화

-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

③ 방북안내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마련

- 남북교역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방북 안내교육 및 접촉방북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④ 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제도 마련

-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또한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가능

한편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01.12.31)을 통해 반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수급불안정 문제의 해소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대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인 품목 등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하는 등 반출입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2001.12.31)>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수산물 : 냉동 게(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홍갑장 9cm 이하에 한함), 신선냉장 게(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에 한함)
- 농산물 : 들깨, 인삼분(백삼), 인삼정(백삼), 기타견과 땅콩의 씨류(조제저장처리), 고추장, 혼합조미료, 혼합조마·조제품기타, 인삼류(기타백삼제품류)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수산물 : 냉동 홍어
- 농산물 : 감귤(신선/건조), 맨더린류(감귤이외/신선·건조),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푸르트 이외/신선·건조),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맥주맥, 맥아(볶지 아니한 것), 맥아(훈연한 것)

③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컴퓨터

정부는 2002년 10월 24일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개정을 통해 비록 포괄승인품목이더라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3국산 물품의 북한산 위장 반입을 방지하여 남북 교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북한물품의 국내 반입시 「신고」 물품의 반입승인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개정하여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2.10.24)>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물품을 포괄승인 품목으로 변경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

- 영 제 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물. 다만,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2003년 12월 22일에는 위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의 바뀐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식물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위장반입을 방지하며 반입실적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적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3.12.22)>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한약재 : 녹용전지, 녹용기타, 녹각
- 임산물 : 냉동밤, 냉동대추, 냉동잣, 냉동호두
- 수산물 : 건명태(북어), 건조어류피렛트(명태포)

②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제외

- 수산물 : 미꾸라지(활어)

③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중 제한내용 추가

- 꽃게의 산란기간 중 반입제한(7.1-8.30)
-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치게(두흉갑장 9cm 이하, 털게 7cm 이하) 반입제한

2004년 7월 8일에는 남북간 청산결제 시행에 대비하여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에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그동안 도서에 준하여 처리해 오던 게임물을 승인대상품목으로 명문화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4.7.8)〉

① 반입물품으로 승인을 요하는 물품에 추가

- 게임물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 결제방법에 추가

-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2004년 12월 30일에는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어장 조업 관련 북한산 오징어 반입으로 인한 국내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산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를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4.12.30)〉

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신설

- 수산물 : 오징어(산갓·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05년 3월 23일에는 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범위 내에서 물품의 반출입시 통일부와 세관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의 신고절차를 폐지하였으며, 협력사업과 위탁가공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한 반출입시 예외적으로 승인을 면제시켜 왔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2005.3.23)〉

①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 협력사업·위탁가공 물품의 제3국 경유 반입시 승인 예외조항 삭제

② 반출입시 신고 절차 폐지

- 협력사업자가 포괄승인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2005년 10월 3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05.12.1시행)에 대비하여 민원 편의를 기하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를 반입승인 대상물품에 명시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2005.10.31)〉

① 고시의 제명 변경

-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로 개정

② 승인을 요하는 물품 추가

- 반입승인을 요하는 물품에 “소프트웨어” 명시

③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간소화

- 물품반입(출)승인 : 20일 → 15일
- 물품반입(출)승인변경승인 : 20일 → 10일
- 첨부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주민접촉승인서,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를 삭제

Ⅱ. 남북교역 및 수송 현황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가. 추진현황

한반도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규모는 미미하였지만 1989년에는 1천9백만 달러,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면서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도에도 남북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남북간 경협은 그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험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6년에는 교역규모가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힘입어 교역량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남북간 교역도 큰 영향을 받게되어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2억2천만달러에 머무는 등 교역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곧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내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9년 남북교역액은 농수산물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가에 따라 3억3천만달러로 급상승하였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자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한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억달러선을 유지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제공 등에 따라 6억달러를 넘어섰고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3년에도 남북 교역량이 2002년 대비 12.9% 증가한 7억2천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를 유지하였다.

2004년에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비거래성교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내수부진 및 일부 농수산물의 한도물량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3.8%감소한 6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남북교역이 다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교역 시작이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이래 2004년까지의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49억9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26억1천만달러, 반출이 23억8천만달러이다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67		
1989	66	24	18,655	1	1	69	83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300	26	13,466
1991	300	43	105,719	-	16	5,547	572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698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975	103	186,59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2,644	158	194,547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3,383	244	287,291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3,991	258	252,039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4,810	36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6,510	449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7,394	488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754	578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8,796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11,20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9	588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2	575	439,001	12,89	634	697,040
							2		
계	37,564	1,995	2,613,584	34,514	4,190	2,378,572	72,078	5,186	4,992,162

* 주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 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나. 교역형태·품목

(1) 교역형태

남북한간 교역은 북한이 초기에는 직접적인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도적 여건 미비로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남북간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반입 및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북한과 직접 상담하고 계

약하는 직접교역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3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 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에 경협이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어 직접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에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소됨으로써 그동안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교역상담이 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직교역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 : 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 : 1, 1997년에는 1.7 : 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1 : 1.4 반출이 반입을 초과한 이후 반출이 반입을 초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식량차관 지원, 금강산 관광 사업물자, 개성공단 건설 자재·장비, 인도지원물자 등의 반출에 기인하고 있다.

(2) 반입품목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초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금괴, 아연 괴 등 철강 금속류를 비롯하여 광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4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철강 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산품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최근에는 1차산품인 농수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2004년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한도물량 축소 등으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들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류의 경우도 2004년에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들어 국내 내수회복 등으로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도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과 섬유류가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는 농림수산물(39.5%), 섬유류(37.2%), 철강금속제품(15.2%)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품 목	'03(A)		'04(B)		증 감 율 (B/A)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농림수산물	127,846	44.2	101,862	39.5	-20.3
광산물	17,139	5.9	5,925	2.3	-65.4
화학공업제품	1,003	0.3	201	-	-80.0
플라스틱· 고무가죽제품	521	0.2	406	0.2	-22.1
섬유류	96,527	33.4	95,885	37.2	-0.6
생활용품	3,814	1.3	3,773	1.5	-1.1
철강·금속제품	32,743	11.3	39,332	15.2	20.1
기계류	831	0.3	1,377	0.5	65.7
전자전기제품	8,677	3.0	8,805	3.4	1.5
잡제품	149	0.1	472	0.2	216.8
소 계	289,252	100	258,039	100	-10.8

(3) 반출품목

북한으로의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공업제품이 최대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북한 원전건설용 물자,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 무상지원물자의 반출증가로 농산물, 건설용 자재·장비 등의 반출이 증가되고 있다. 1999년

부터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 건설용 자재가 본격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2004년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주로 비료) 31.0%, 섬유류 20.4%, 농림수산물 15.2%, 기계류 9.8%, 전자전기제품 7.1%, 광산물 6.6%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반출현황

(단위 : 천달러, %)

품 목	'03(A)		'04(B)		증감율 (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125,508	28.9	66,877	15.2	-46.7
광산물	6,296	1.4	29,050	6.6	361.4
화학공업제품	91,406	21.0	136,053	31.0	48.8
플라스틱· 고무가죽제품	5,758	1.3	9,199	2.1	59.8
섬유류	89,025	20.5	89,523	20.4	5.6
생활용품	3,585	0.8	5,342	1.2	49.0
철강·금속제품	28,079	6.5	21,430	4.9	-23.7
기계류	27,900	6.4	43,144	9.8	54.6
전자전기제품	21,111	4.9	30,960	7.1	46.7
잡제품	36,298	8.3	7,422	1.7	-80.0
소 계	434,965	100	439,001	100	0.9

2. 위탁가공교역 현황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5,892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 1997년 79,069천달러로 크게

증대되어 왔다.

1998년 위탁가공 교역액(70,988천달러)은 IMF상황하의 국내경기위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1997년도의 26%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었으며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129,1902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그 증가 추세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2001년에는 124,924천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가운데 2002년도에는 의류 분야 임가공 증가에 힘입어 171,177천달러, 2003년도 185,009천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4년도는 176,008천달러로 다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국내 내수회복 등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북한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와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칼라TV, 전화기, 자동차배선, 컴퓨터 모니터, 카세트이프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총금액	위탁가공	총금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271,575	102,789	370,155	68,388	641,730	171,177
2003	289,252	111,639	434,965	73,370	724,217	185,009
2004	258,039	107,791	439,001	68,218	697,040	176,008
합 계	2,613,581	680,121	2,378,580	509,668	4,992,162	1,189,789

3. 수송장비 운행 현황

가. 개 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남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1994년 6월에는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신청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선박의 안전운항 기준을 위한 승박운행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남북간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 운항이 급증함에 따라 2005년 6월에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고시를 통합하여 수송장비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

2005년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발효되어 지금까지 제3국적선에 의존하던 남북간 화물을 국적선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부속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간을 운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외에 통일부를 통해 북한 육해운성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합의서에서 정해진 남북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철도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2004년 12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가 완공되어 개성공단 건설용 자재 장비, 금강산관광 시설용 물자 및 인원 수송이외에도 상업적 물자가 운송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1월 현재 경의선 철도의 본선궤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동해선 철도는 공사중에 있다. 2005년 8월 1일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어 남북간 원활한 자동차 및 열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왕래인원

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남북 간에는 국적기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직접 운항할 수 있는 임시비행로가 설정되어 있다.

나. 남북간 선박운행

(1) 운행 노선

남북 교역물자 수송을 위한 선박운행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기선은 2005년 12월 현재 3개 노선으로 인천-남포간에 국양해운(주)의 Trade Fortune(트레이드 포춘)호가 주 1회(매주 수요일 인천 출항), 부산-나진간에 동룡해운(주)의 Chu Xing(추싱)호가 월 3회, 경수로 인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에 대아고속해운(주) 한겨레호가 격주(화요일 속초 출항)로 운행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객 수송을 위해 속초-장전간을 운행하던 현대아산(주)의 설봉호는 2004년 1월부터 운행을 중단하였다. 정기항로 이외에 국내 교역업체 등이 수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중국 등 제3국적선을 용선하여 인천-해주, 목호-홍남, 속초-홍남, 목호-원산간 등을 부정기로 운행하고 있다.

(2) 운행 횟수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2004년말까지 남북간 선박운행은 편도기준으로 13,131회이다. 이 중 남에서 북으로의 운행이 5,634회, 북에서 남으로의 운행이 7,497회이다. 2004년에는 남에서 북으로 946회, 북에서 남으로 1,178회, 총 2,124회 운행하였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목호항, 속초항, 북한지역에서는 해

주향, 흥남향, 남포향, 나진향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에는 인천-해주간에 북한산 모래반입을 위한 선박운행이 급증하여 전체 운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 현황

(단위: 회)

구분	1994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남→북	126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946	5,634
북→남	27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1,178	7,497
계	404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2,124	13,131

(3)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2004년말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7,810천톤으로 이중 남에서 북으로의 물동량은 5,288천톤이며 북에서 남으로의 물동량은 2,039천톤이다. 2004년에는 총 1,108천톤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물동량은 625천톤이며 북에서 남으로의 물동량은 483천톤이다. 최근 남북 교역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식량차관, 비료지원 등으로 물동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은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북한지역은 해주항, 남포항, 나진항, 청진항에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에 의한 물동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1994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남→북	288	148	361	396	781	547	402	899	841	625	5,288
북→남	477	188	250	162	203	156	239	157	207	483	2,522
계	765	336	611	558	984	703	641	1,056	1,048	1,108	7,810

다. 남북간 자동차운행

남북간 자동차운행은 2003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되어 경의선은 주로 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수송, 개성공단 건설 인원·물자 수송, 남북 당국간 회담 참가 인원 수송을 위해,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2003년 9월 11일 정부는 임시도로 이용범위를 확대조치를 취하여 평양체육관 개관행사 참석인원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게 되었다. 향후 경의선, 동해선 도로가 정식 개통되고 남북관리구역 통행방법이 현재의 시간대별 통행방식에서 일자별 통행방식 등으로 개선될 경우 교역물자 수송 등을 위한 남북간 자동차운행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차량운행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3	2004	계
남→북	4,392	30,899	35,291
북→남	4,391	30,616	35,007
계	8,783	61,515	70,298

라. 남북간 항공기운행

남북간 항공기운행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2005년 11월말까지 총 472회가 운항되었다. 2004년에는 남북관계의 일시 경색으로 28회 운항에 그쳤으나 2005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되어 11월말 현재 남 → 북 101회, 북 → 남 103회, 총 204회가 운행되었다.

남북간 항공기운행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11	계
남→북	20	8	33	55	14	101	231
북→남	23	11	34	56	14	103	241
계	43	19	67	111	28	204	472

Ⅲ. 남북교역 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가.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남한의 주민이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역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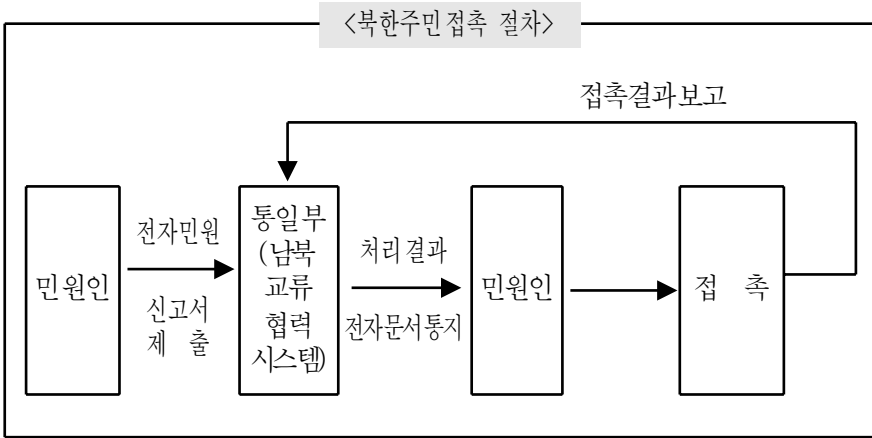
동 법에서 말하는 남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의 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 뿐만 아니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또한 접촉의 기본적인 개념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특히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접촉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Internet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2) 북한주민접촉 신고



(가) 신청방법 및 처리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문서에는 접촉신고가 수리된 경우 접촉신고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신고 수리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거부의 경우에도 거부사유가 기재된다.

신고서 수리기간은 보통 10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고해야 한다.

<신 고 서 류>	
서 류 명	작 성 방 법
① 북한주민접촉신고서 ② 인적 사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③ 회사소개서 ④ 대북사업계획서 ⑤ 북한회사 소개서 ⑥ 중개상사 소개서 ⑦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⑥은 한글파일 작성 후 업로드 - ⑦,⑧은 스캔받아 파일작성 후 업로드

(나) 신고서류 작성

북한주민접촉 신고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신고인 인적사항에는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에는 신고자가 접촉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의 대리인을 접촉하는 관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북측의 회사명 정도만 기록해도 무방하다.

또한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동시에 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자를 대표하여 1인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며, 인적 사항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나머지 대상자도 추가로 인적 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인적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원사항을 양식에 있는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입력하고 우측 상단에 신고인 사진은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관련서류 첨부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1)회사소개서는 북한과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 회사에 대한 기초사항을 파악하여 그 회사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 양식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2)대북사업계획서는 신고회사가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추진 경위, 사업분야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북한회사 및 (4)중개상사 소개서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5)무역업고유번호부서서 사본은 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은 후 그 사본을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며, (6)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스캔받아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다) 접촉결과 보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접촉신고 수리를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결과보고를 하며, 통일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게시된 양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파일과, 기타 계약서 등 참고자료는 스캔후 작성된 파일을 관련서류첨부에 각각 업로드하면 된다.

(라) 신고 수리 유효기간 및 연장신고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신고 수리 유효기간중에는 수리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수리기간 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고 수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 수리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고를 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접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고시 필요한 신고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고 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고서류중 <인적 사항>과 같이 처음 신고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는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신고 수리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당초 신고한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의 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 수리를 받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6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수리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사전계획이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신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남북한 왕래

(1) 남북한 왕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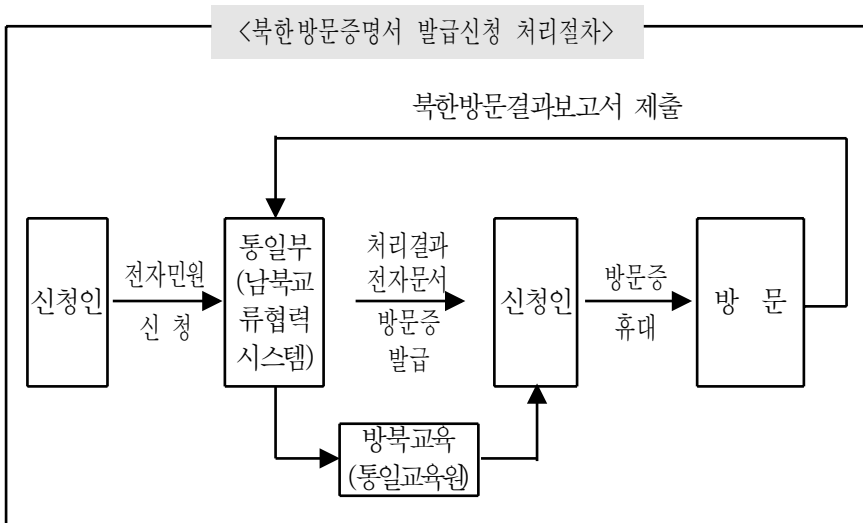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 등 출입장소를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 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 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2) 북한방문 절차



(가) 신청방법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통한 전자민원 신청이 원칙이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방문을 신청한 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신 청 서 류>	
서 류 명	작 성 방 법
①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② 인적 사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작성
③ 방북계획서 ④ 초청장 -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③은 한글파일로 작성후 업로드 - ④은 스캔받아 파일작성후 업로드 (원본은 직접제출)

(나) 신청서류 작성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작성하며, 구체적인 「인적사항」 작성은 북한주민접촉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방북계획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방북목적, 접촉인사, 추진사업 내용, 일정별 협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업로드 한다.

또한 초청장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청장은 북한기관에서 발급되며,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초청의사 확인 여부,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다)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인적 사항과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수시방북제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방북이 가능한 수시방북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을 방문하고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30-5:00(변경가능)에 실시된다.

(마)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금지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에 소개되어 있다.

(바)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방북시 활동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제출하면 된다.

(3)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

청서류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신 청 서 류>

- ①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 ②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1매
- ③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④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⑤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육로왕래와, 정기선 또는 부정기선박을 이용한 해로 왕래, 부정기 운항 항공기를 이용한 공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왕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이전 남북당국간 회담 등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2003년 12월 24일 정식 개소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 현재 교역상담, 경의산동해선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수송, 개성공단 건설 자재 수송, 금강산 육로관광, 남북당국간회담 대표단 등 남북간 직접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등에서 북한 방문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와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5)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가) 재외국민의 범위

법 제9조제5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

민의 북한방문은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3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남북교역

가.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

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의 면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며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이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 확립 또는 보건·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예〉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식 품 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 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허가와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남북간 교역물품은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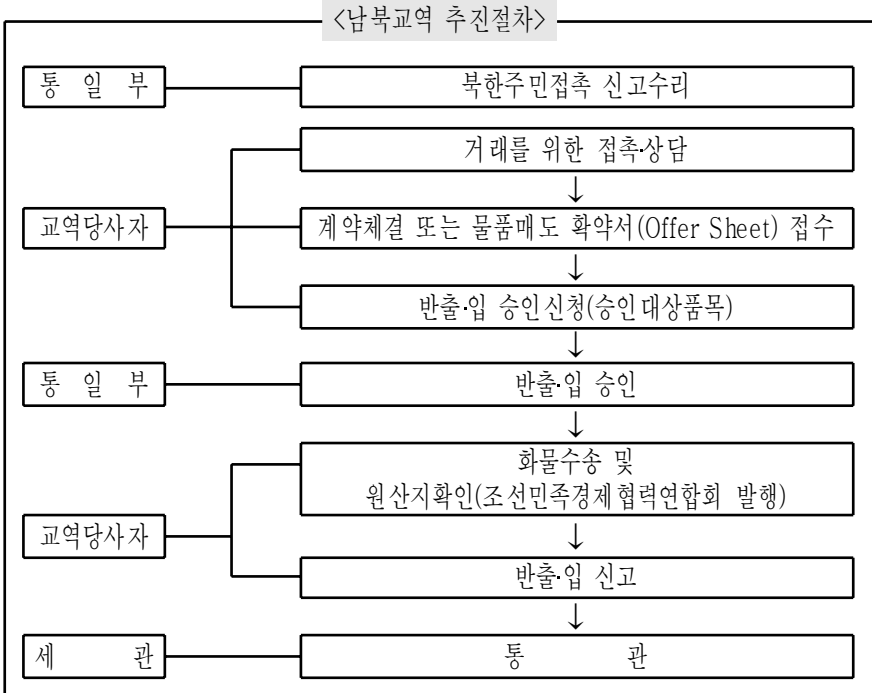
- ①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품목
- ②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 ③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 ④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 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 ⑥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 ⑦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 ⑧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2)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①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⑤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⑥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남북교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 북한측 교역 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거래 초기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홍콩·일본·중국·싱가폴 등 제3국의 무역상·해외동포·한국상사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상담경험과 거래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한측 교역당사자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직접 접촉·상담은 주로 북경, 단둥 등 제 3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가 2005년 10월 개성에 개소됨으로써 앞으로는 이곳을 중심으로 접촉·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계 약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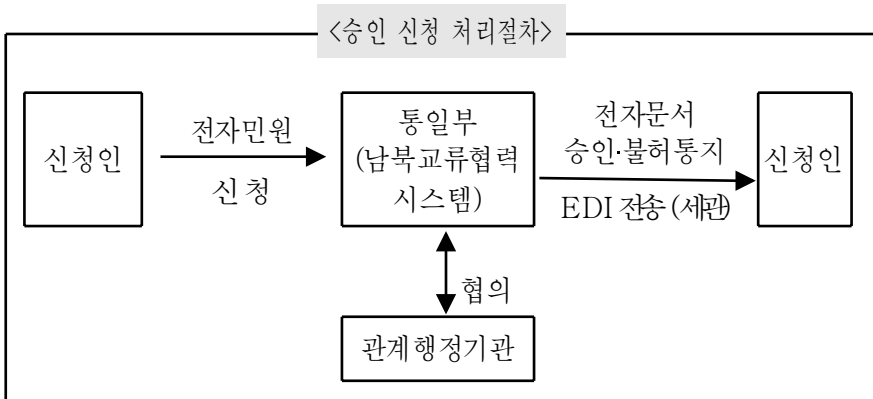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상당부분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9월 통일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300여개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남북 교역당사자간 직접 계약하는 직접교역 업체수의 비율은 17.4%인 반면,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은 60.1%, 직접교역과 간접교역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교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형태로, 현재로서는 교역 분쟁발생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2003년 8월 20일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및 2005년 8월 1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향후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 위험요인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남북은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한간 직거래 확대 추진에 합의한 이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간 직접교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반입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가) 반입승인

북한물품을 반입할 경우 반입물품이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중 금액의 변경(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금결제방법, 승인유효기간, 승인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입신청 접수시 통일부에서는 당해 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품목 결정시 이들 기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반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 ②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입대행 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④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 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나)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 ②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③ 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다) 반출입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때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 혼합거래 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중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남한 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다. 반출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류>

- ① 반출입승인신청서
- ② 반출반입계약서 (하나의 계약서)
 -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 추가
- ③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 ④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4) 대금결제

남북간에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 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남북교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제3국은행을 통한 송금환(T/T) 방법이며, 이밖에 물물교환(Barter Trade), 직접 현금지급 등도 이용되고 있다.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교역품목이 포괄승인품목일지라도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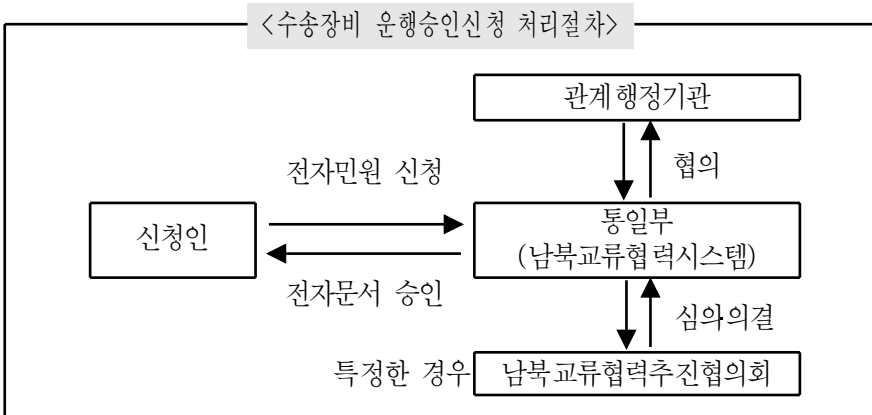
(5) 수 송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

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에 필요한 통관, 검역, 출입국관리는 관계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선 박

남북한간 선박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외에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남북

해운부속합의서”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를 경유하여 북한으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남한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박에 한한다.

통일부장관의 선박운항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선박운항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이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항계획서 1부
- ②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③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 ④ 선박보험증서(P&I증명서) 사본 1부
- ⑤ 선원명부 1부
- ⑥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북한의 선박운항허가 신청은 근무일 기준으로 출항예정 3일전까지 선박운항허가신청서(남북해운부속합의서 부록 제1호 양식)에 ① 선원명부, ② 적재화물목록, ③ 여객명부(여객선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통일부장관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처리기간은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이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항계획서 1부
- ②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⑤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철도차량

통일부장관의 철도차량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이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행계획서 1부
- ②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자동차

남북한간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자동차운행승인 외에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로서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을 남북출입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의 자동차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4호 서식)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이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행계획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 ⑤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통일부로부터 자동차 운행이 승인되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통지되며, 신청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행차량 증명서를 출력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6)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나(양식도 일반수출입신고서 사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 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가) 반입물품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가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검사 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행)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류에서 선하증권 사본, 선박항해일지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꿔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나)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생산된 지역 즉 「상품의 국적」을 뜻한다. 원산지는 생산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생산」은 채취·가공·제조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2003.9.29 제정, 통일부고시)에 나와있는 남북교역물품용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북측은 우리측에 통보한 『민경련』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송하인, 수하인 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하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수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 사용언어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발급기관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03.9.29 발효)를 채택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남한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하게 되었다.

□ 인정기준

남한과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

우,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등이다. 세부 원산지 판정·확인기준은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이외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대해서는 통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임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 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비과세 통관도 가능하다.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 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다)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 관세 등

(가) 관 세

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나) 내국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관세환급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이를 환급한다.

마. 위탁가공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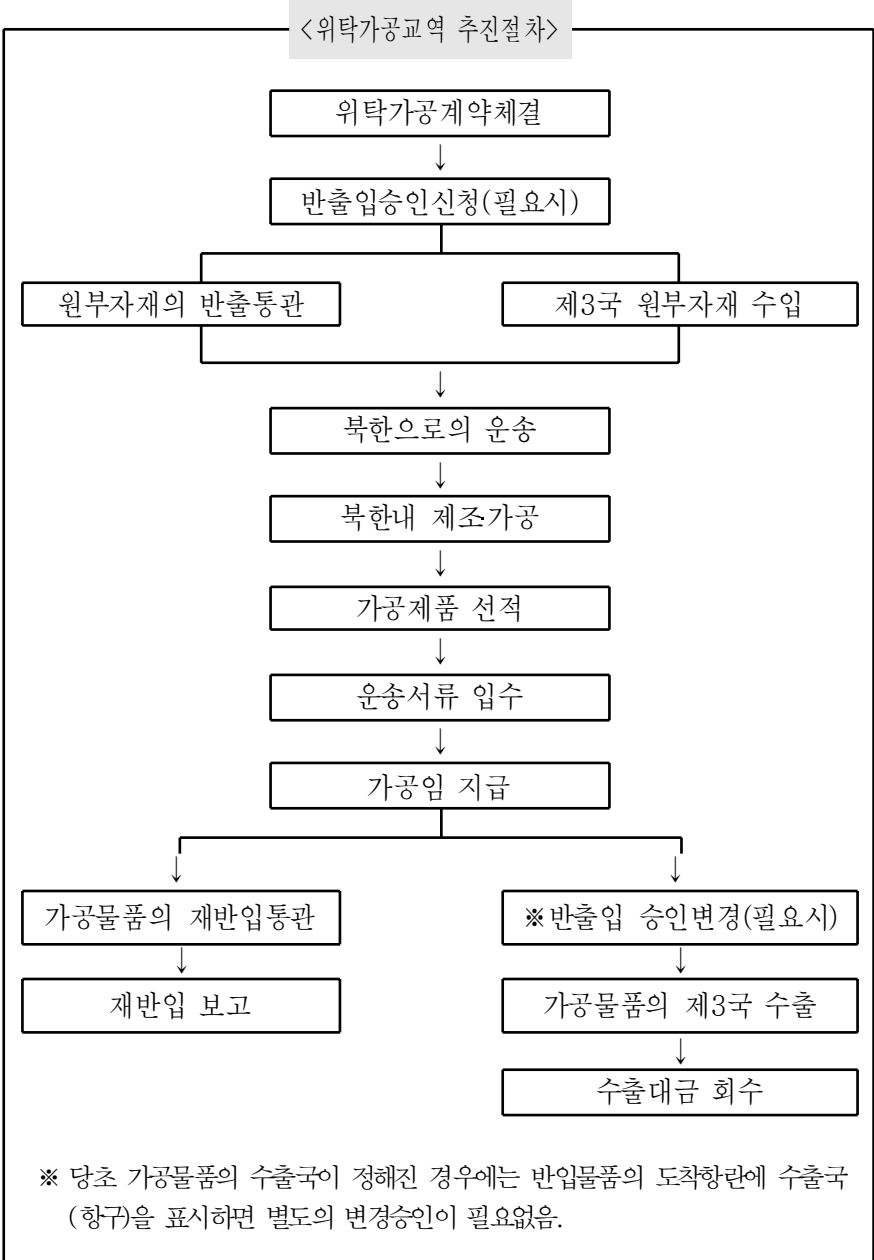
(1) 위탁가공교역 개요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2) 반출입 승인절차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을 위해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입으로 본다. 다만, 시설재를 공급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기계·장치설비 공급이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1항의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해당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무상반출입 등 거래형태로 인해 반출입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도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승인절차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가. 기금대출 개요

(1) 대출종류

- 경제협력사업대출 :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 반출·반입자금대출 :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구 분	거 래 형 태
반출·반입 거래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
위탁가공 거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 및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

(2) 기금대출의 특성

남한주민의 경협 소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남북협력기금은 여타 시중금리보다 저리(별도의 비용부담 없음)로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등에 있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대출승인시 금리가 고정되는 원화표시 대출제도이다.

나. 기금대출 대상

(1) 신청요건

- 경제협력사업대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남한주민
-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2)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

경제협력 사업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어업분야의 경제협력사업 시행자 -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 시행자
반출반입 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용 종자·농자재를 반출하고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용 어선·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3) 대출제외대상

-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
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담보제공시에는 대출 가능)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담보제공시에는 대출
가능)
- 본 대출 이외에 타 금융자금으로부터 중복하여 대출을 받은 자
-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2개 이상의 중소
기업과 동반 진출하거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
우는 대출 가능)

다. 지원 조건

(1) 경제협력사업대출(투자자금대출의 경우)

- (가) 대출금액 :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
되는 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 (나)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성격에 따라 5년 이내 거치 가능)
- (다) 대출이자율 : 『대출이자율』면 참조
- (라)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 분할상환
- (마) 채권보전 : 담보 또는 신용(신용도와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바)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대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

**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2) 반출반입자금대출

(가) 대출 금액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계약금액에서 기수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설비 반출자금대출	소요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 90%) 이내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반입금액(선급금과 운임·보험료 포함)의 80% (우선지원대상 90%) 이내

(나) 대출기간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 로부터 최종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제3국 수출시에는 개별 대출취급일 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내 거치가능)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 품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 대출이자율 : 『대출이자율』면 참조

(라) 상환 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마) 채 권보 전 : 담보 또는 신용(신용도와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라. 실적한도대출

지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남북 교역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6개월)의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포괄금융방식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1) 대출대상 :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
- (2) 대출금액 : 10억원 이내에서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이내
 - ※ 단,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30억원까지 가능

남북교역 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교역실적의 70% (중소기업 80%)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교역실적의 50% (중소기업 60%)

주) 교역실적 : 최근 1년간 반출입실적 합계의 1/2

- (3)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1년까지 가능
- (4)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5)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 재대출시 반영

마.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1) 단기 반출반입거래의 특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단기성 반출입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 대상거래 :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반출입거래
- 대 상 자 :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결산 3기 이상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것
 -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한 재무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 신용대출한도 : 30억원. 단, 차주 순자산의 20% ~ 60% 범위이내

(2) 북한소재자산 제공시의 특례

북한에 소재하는 자산을 첨단보*로 제공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일정비율을 신용대출로 한다.

* 첨단보 : 주담보를 보완하는 담보로 그 자체가 담보권은 아님

- 대상거래 : 경제협력사업 및 반출·반입 거래
- 대 상 자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자
 -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원부자재 반출거래의 경우 1년 이상 대북거래 경험이 있을 것
 -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의 연대입보
 -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단독투자 또는 합영투자방식에 한함
- 대상자산의 범위 : 해당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토지이용권·건물, 기계설비, 원부자재

- 북한당국(또는 계약상대방)의 소유권 인정
 - 토지이용권·건물의 경우에는 북한기관에 저당권 등록
 - 북한당국(또는 계약상대방)의 저당권(또는 양도담보권) 행사 보장
 - 차주의 원부자재(기계설비) 양도담보계약서 제출
 - 차주의 저당권(또는 양도담보권) 관리의무 수행
 - 기타 기금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취득요건 구비
- 신용대출한도 : 해당자산 잔존가치*의 20% ~ 50% 범위이내
단, 차주 순자산의 50% ~ 70% 범위이내
- * 토지이용권은 임대료, 건물·기계설비는 잔존가치, 원부자재는 구입가 적용

(3) 북한소재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제공시의 특례(실적한도대출)

중소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와 관련하여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첨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실적한도대출시 아래의 조건으로 신용대출한다.

- 포괄양도계약 체결 : 국내의 원부자재(북한소재 원부자재 포함)
- 신용대출인정비율 :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이내
- 대출기간 : 완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4) 부분신용보증서 제공시의 특례

부분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 해당 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한다.

- 부분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 대상거래 :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반출입거래
- 대 상 자 : 중소기업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인 자
- 신용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원 미만.
단, 차주 순자산의 40% 이내

바. 대출이자율

남북협력기금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북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 고정금리로 운용 : 대출승인 시점에서 금리고정

(2)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 기준금리 + 신용위험가산율-중소기업 할인율

* 단,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1~3%

(3) 기준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

대 출 기 간	1 년 이 하	1 년 초 과	3 년 초 과
국고채 기간물	6 월 물	1 년 물	3 년 물

* 신청접수일 전월의 평균 유통수익률

(4) 신용위험가산율 :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Delta 1.0\% \sim 0.5\%$

구 분	신용위험가산율
지급보증	$\Delta 1.0\%$
물적담보	$\Delta 0.5\% \sim 0\%$
신용대출	$0\% \sim 0.5\%$

(5) 중소기업 우대 : 최종 대출이자율에서 0.5% 포인트 차감 적용

사. 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1) 대출절차



(2) 구비서류

대출승인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 이사회기체결의서 사본 -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유휴설비 성능검사서 등)
대출집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집행신청서 - 대출금 및 자기자금 사용(예정)명세서 - 기타 필요서류(대출거래약정서, 소요자금 증빙서 등)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기금과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 본부
전 화 : (02) 2100-2591~6 팩 스 : (02) 720-2146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 화 : (02) 3779-6629, 6636 팩 스 : (02) 3779-6758 홈페이지 : http://www.koreaexim.go.kr

<지 점>

지 점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부 산 지 점	(051)817-5050	(051)817-6060
대 구 지 점	(053)754-1021	(053)754-1020
창 원 지 점	(055)287-6830	(055)287-6831
광 주 지 점	(062)232-6944	(062)232-6946
인 천 지 점	(032)235-6114	(032)442-6121
강 남 지 점	(02)6248-6114	(02)6248-6119
대 전 지 점	(042)489-9715	(042)489-9716
수 원 지 점	(031)259-6606	(031)259-6609
울 산 지 점	(052)274-5276	(052)274-5278
전 주 지 점	(063)271-6134	(063)271-6139
청 주 지 점	(043)237-0475	(043)237-0476

<부록 1>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87
1. 북한주민접촉	87
2. 북한 및 남한 방문	99
3. 교역물품 반출입	104
4. 수송장비 운행	112
■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	120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120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131
■ 자금대출 신청서	144

▣ 전자민원 신청 안내 및 서식

※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에 접속 후 우선 사용자등록(ID)을 한 다음, 해당 민원메뉴를 찾아서 신청하며, 처리상황(확인요망, 처리중, 승인 등)은 MY PAGE에서 확인 가능함. 승인(수리)공문은 처리상황란의 “승인(수리)”를 더블클릭하여 출력·활용함.

*유의! : 도구-인터넷옵션-보안설정(최저단계로 설정) 및 한글2002가 설치된 경우에만 승인(수리)공문 출력 가능함.

1. 북한주민접촉

가. 북한주민접촉 신고 : 접수일로부터 10일(처리기한), 접촉기간(3년이내)

(1)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2) 인적 사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사진 업로드 : 증명사진을 스캔 받아 파일(.jpg)로 저장한 후, 인적 사항상 파일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 사진 파일을 찾아 지정후 확인버튼을 누름.

※ 해당자는 모두 작성 : 인적 사항 메뉴를 클릭하면 새로운 인적 사항이 펼쳐지며 추가로 작성 가능함.

- 회사대표(필수), 해당직원(선택)

(3)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① 회사소개서, ② 대북사업계획서, ③ 중개회사 소개서
 - ④ 북한회사 소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무역협회에 신고하면 동 번호부여서 발급
- ※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①~④), 스캔 후 파일작성(⑤~⑥)

나.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또는 담당자 E-mail로 발송

- * 결과보고는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은 후, 매 접촉시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 마당에서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 기타 합의서(계약서) 등 : 스캔 후 파일 작성

북한주민접속

북한주민접속 안내

북한주민접속신고서

인적사항

관련서류첨부

접속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사후결과보고(미승인)

Home > 북한주민접속 > 북한주민접속신고서

북한주민접속신고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0일]

*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재외국민)	<input type="text"/>
생년월일(재외국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주소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직업	<input type="text"/>
직장연락처	<input type="text"/>
접속목적	<input type="text"/>
접속경위	<input type="text"/>
접속일정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접속장소	<input type="text"/>
접속방법	<input type="text"/>
접속경험 (3년이내)	<input type="text"/>
신청과	남북교역과 <input type="button" value="v"/>

* 피접촉인 인적사항(복축)

* 피접촉인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확인

취소

북한주민접속

- > 북한주민접속 안내
- > 북한주민접속신고서
- > 인적사항
- > 관련서류첨부
- > 접속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사후결과보고(미승인)

Home > 북한주민접속 > 인적사항

인적사항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접속신고서 신청번호 에 대한 인적사항

인적사항 검색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재외국민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 인적사항 작성시 체크)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 (재외국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업로드"/>
생년월일 (재외국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성별(재외국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본 적	<input type="text"/>	
주 소	<input type="text"/>	
직장명	<input type="text"/>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가정	<input type="text"/>
	직 장	<input type="text"/>
	휴대폰	<input type="text"/>
신장	<input type="text"/> Cm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가입 단체명	<input type="text"/>
	직 책	<input type="text"/>
	군 별	<input type="text"/>

북한주민접촉

- > 북한주민접촉 안내
- > 북한주민접촉신고서
- > 인적사항
- > 관련서류첨부
- > 접촉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사후결과보고(미승인)

Home > 북한주민접촉 > 관련서류첨부

관련서류첨부

열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첨부할 신청서와 신청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북한주민접촉신고서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
 북한주민접촉보고서
 사후북한주민접촉보고서

* 서식 다운로드

중개인상소개서	북한회사소개서
북한주민접촉계획서	북한주민접촉 절차및서식안내
대북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용량이 4MB 이상인 파일은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신청번호선택 에 대한 관련서류첨부

파일 1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2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3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4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5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6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파일 7	문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찾아보기...

확인

취소

북한주민접속

- > 북한주민접속 안내
- > 북한주민접속신고서
- > 인적사항
- > 관련서류첨부
- > 접촉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사후결과보고(미승인)

Home > 북한주민접속 > 사후결과보고

사후결과보고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재외국민)	<input type="text"/>
생년월일(재외국민)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주소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직업	<input type="text"/>
직장연락처	<input type="text"/>
접촉일시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접촉장소	<input type="text"/>
접촉경위	<input type="text"/>
접촉방법	<input type="text"/>
접촉결과개요	<input type="text"/>
신청과	남북교역과 <input type="button" value="v"/>

* 피접촉인 인적사항(복측)						
피접촉인 인원	0 <input type="button" value="v"/>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 주민접촉신청시 첨부서류

(#1)

회사 소개서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직원현황	
자본금	
매출액	
사업내용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2)

대북사업계획서

사업추진경위	
추진분야 (임가공교역 등)	
사업내용 (일정 품목, 규모 등)	
사업성 판단	
향후계획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3)

중개인(상) 소개서

중개인(상명) (영문명)			
소재지 (주소)			
전신약호		TLX	
전화		FAX	
관련직원 (직위, 성명)			
취급품목			
특징 (남북교역 중개관련 특기사항)			
거래상사	남한		
	북한		
회사와의 관계 (거래동기, 접촉경위, 중개실적 등)			
참고사항 (북한과의 관계 등)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4)

북한회사 소개서

회사명			
상부 소속기관 또는 회사			
소재지 (주소)			
전화		FAX	
총사장 (나이, 성명)			
직원 (성명, 직책 등)			
취급품목			
회사와의 관계 (거래동기, 접촉경위 등)			

작성자(소속성명연락처)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첨부자료

(#5)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접촉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고 분량은
접촉결과 내용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가. 접촉인 인적사항

.
.

* 접촉인의 성명·소속 및 직책·주민등록번호를 기록

나. 피접촉인 인적사항

.
.

* 접촉한 북한주민(또는 중개인)의 인적사항(성명·소속 및 직책·나이 등을 기록)

다. 접촉일시 및 장소 : 200 년 월 일 ~ 월 일,
장소

라. 접촉목적 및 경위

- 북한주민(또는 중개인)을 접촉하게 된 목적·배경·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직접접촉 또는 중개인·FAX등 송수신 방법 등

2. 주요 접촉내용

- * 북한주민과 접촉시 협의·상담·조사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가.

○

○

.

.

- * 협의 관련서류 또는 자료 첨부

3. 기타 참고사항

- * 북한측 반응, 정세관련 사항, 접촉소감 등을 기록

4. 향후 추진계획

○

○

○

2. 북한 및 남한 방문

가.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 접수일로부터 10일(처리기한)

- (1)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인적 사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해당자는 모두 작성) 및 사진 업로드
- (3)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① 방북계획서(임의양식) : 방북예정자, 방북일정, 방문목적, 피접촉인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작성후 파일(.hwp)로 첨부
 - ② 초청장(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스캔후 파일(.jpg)로 첨부
 - ※ 초청장 원본은 직접 제출
- (4) 방북예정자 교육 : 통일교육원, 매주 화요일 오후

나. 북한방문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담당자 직접 작성 또는 담당자 E-mail로 발송

* 북한방문후, 결과보고는 10일이내 보고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전자민원창구-민원 마당에서 관련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 기타 합의서(계약서) 등

다.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사유서(임의양식)

라.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사유서(임의양식)

마. 남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참조

바. 북한방문 신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1) 관련서류 첨부 : 파일 업로드
 - 초청장
 - 방북계획서(임의양식)
 - 방문증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북한방문 관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인적사항

> 북한방문신고서

>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방문증명서 재발급 및 방문 기간연장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인적사항

> 출입통행계획서

관련서류첨부

Home >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증명서 부착용 반명함판 사진(뒷면 인적사항 기재) 1매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처리기간 : 10일]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신장	<input type="text"/> Cm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 (재외국민)	<input type="text"/>
생년월일 (재외국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주소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직업	소속 <input type="text"/> 직위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방문목적	<input type="text"/>
방문경위	<input type="text"/>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방문예정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방문지역	<input type="text"/>
방문 및 귀환 예정료	<input type="text"/>
방문경험	<input type="text"/> (과거 3년 이내)
신청과	남북교역과 <input type="button" value="v"/>

* 방문대상자 인적사항(복족)

* 방문대상자 인원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동반자녀

* 동반자녀 인원 명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북한방문 관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인적사항

▶ 북한방문신고서

▶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방문증명서 재발급 및
방문 기간연장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방문유휴기간
연장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인적사항

▶ 출입통행계획서

관련서류첨부

Home >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신고서

북한방문신고서

열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3일]

신고자	성명	<input type="text"/>	인적사항 검색
	재외국민 여부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 신고서 체크)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 (재외국민)	<input type="text"/>	
	생년월일 (재외국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자택)	<input type="text"/>	
	직장명	<input type="text"/>	
	전화번호(직장)	<input type="text"/>	
	방문목적	<input type="text"/>	
방문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input type="checkbox"/> 일자별 생성		
방문경로	<input type="text"/>		
신청과	사회문화교류과 <input type="button" value="v"/>		

* 방북신고자 등록(추가)

방북신고 인원	<input type="text" value="0"/> 명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직장명	전화번호(직장)

* 방문대상자 인적사항(복측)

방문대상자 인원	<input type="text" value="0"/> 명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 및 남한방문 안내

북한방문 관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인적사항

▶ 북한방문신고서

▶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방문증명서 재발급 및
방문 기간연장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방문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인적사항

▶ 출입통행계획서

관련서류첨부

Home > 북한및남한방문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방문증명서 부착용 반명함판 사진(뒷면 인적사항 기재) 1매는 우편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처리기간 : 10일]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한글)	<input type="text"/>
성명(한자)	<input type="text"/>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여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출생지	<input type="text"/>
신장	<input type="text"/> Cm
주소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소속	<input type="text"/>
직업	<input type="text"/>
직위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방문목적	<input type="text"/>
방문경위	<input type="text"/>
	(초청장, 방문알선 및 종개인 포함)
방문예정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방문지역	<input type="text"/>
방문 및 귀환 예정로	<input type="text"/>
방문경험	<input type="text"/>
	(과거 3년 이내)
신청과	사회문화교류과 <input type="button" value="v"/>

*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원 명

성명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거주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동반자녀

동반자녀 인원 명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교역물품 반출·입

가. 북한물품반입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15일(처리기한), 승인기간
(3월이내)

- (1) 북한물품반입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경우)
 - (다)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 (라)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 ※ 서식 내려받기 및 작성 (①), 스캔 후 파일작성(②)

나. 대 북한물품반출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15일(처리기한), 승인
기간(3월이내)

- (1) 북한물품반출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출자와 위탁자가 다른경우)
 - (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대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다. 반출입 변경승인 신청 : 접수일로부터 10일(처리기한), 승인기간(3월 이내)

- (1) 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각종 계약서 등은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 (가) 변경계약서
 - (나) 변경승인신청 사유서(임의양식) : 작성후 파일(.hwp)로 첨부

라. 교역보고 : 통관완료후 10일이내

- (1) 교역보고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스캔 받아서 파일(.jpg) 업로드

교역물품반출입

교역물품반출입 안내

대북한물품반출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서

▶ 반출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

▶ 반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 교역보고

관련서류첨부

Home > 교역물품반출입 > 대북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대북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산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인적사항

반출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무역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위탁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원산지	코드	원산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선적항	코드	선적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도착항	코드	도착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수화인	<input type="text"/>		
대금결제 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장 <input type="radio"/> 추심어음 <input type="radio"/> 송금환 <input type="radio"/> 청산결제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금액	<input type="text"/>	단위 :	불(USD) <input type="button" value="↓"/>
결제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가격조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신청과	남북교역과 <input type="button" value="↓"/>		

물품 분류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입력 없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 하세요!
신청이 완료된 후 Mypage > 신청내역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물품내역을 입력하셔서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 물품명세

[* EDI전송시 단가 및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는 절사되며, 잘못된 '단위코드'는 삭제됩니다.]

물품개수

HS코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모성여부
------	----	----	----	----	--------	--------	-------

교역물품반출입

교역물품반출입 안내

대북한물품반출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서

> 반출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

> 반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 교역보고

관련서류첨부

Home > 교역물품반출입 >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인적사항

반입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				
	무역업 허가번호				
위탁자	상호				
	주소				
	성명				
	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원산지	코드	<input type="checkbox"/> 원산지명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선적항	코드	<input type="checkbox"/> 선적항명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송화인					
대금결제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장 <input type="radio"/> 추심어음 <input type="radio"/> 송금환 <input type="radio"/> 청산결제 <input type="radio"/> 기 타				
금액	<input type="text"/> 단위 : <input type="text" value="불(USD)"/>				
결제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가격조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가격조건 코드 'CMF' -> 'CFR']				
신청과	<input type="text" value="남북교역과"/>				

물품 분류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입력 없이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 하세요!
신청이 완료된 후 Mypage > 신청내역의 액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물품내역을 입력하셔서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 물품명세

[* EDI 전송시 단가 및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는 절사되며, 잘못된 '단위코드'는 삭제됩니다.]

물품개수

HS코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	----	----	----	--------	--------

교역물품반출입

교역물품반출입 안내

대북한물품반출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서

> 반출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

> 반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 교역보고

관련서류첨부

Home > 교역물품반출입 > 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반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0일]

* 반입 승인번호 에 대한 변경신청

반입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무역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위탁자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전화	<input type="text"/>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text"/>
원산지	코드 <input type="text"/> 원산지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선적항	코드 <input type="text"/> 선적항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송화인	<input type="text"/>	
대금결제방법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장 <input type="radio"/> 추심어음 <input type="radio"/> 송금환 <input type="radio"/> 청산결제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금액	<input type="text"/> 단위 : <input type="text" value="불(USD)"/>	
결제기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부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까지	
가격조건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가격조건 코드 'CNF' -> 'CFR']

* 물품명세

[* EDI전송시 단가 및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는 절사되며, 잘못된 '단위코드'는 삭제됩니다.]

물품개수

HS코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	----	----	----	--------	--------

교역물품반출입

교역물품반출입 안내

대북한물품반출

> 대북한물품반출
승인신청서

> 반출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북한물품반입

> 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

> 반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 **교역보고**

관련서류첨부

Home > 교역물품반출입 > 교역보고

교역보고

열람하시고 게시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반출/반입 승인번호 승인번호선택 에 대한 교역보고서

보고인	상호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대표자성명	<input type="text"/>
	무역업 허가번호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구분 (반출/반입)	<input type="text"/>	
품명	<input type="text"/>	
HS 번호	<input type="text"/>	
수량	<input type="text"/>	단위 <input type="text"/>
금액	<input type="text"/>	\$(USD)
반출·입일	<input type="text"/>	예)2004-10-01
통관일	<input type="text"/>	예)2004-10-01
특이사항	<input type="text"/>	
보고개요	<input type="text"/>	

확인

취소

(#2)

대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신청 경 위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 성 명		○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승인자는 승인 내역 기재
	○ 유효기간		○ 신고수리번호		
	○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 성 명		○ 전 화		
	○ F A X		○ 이 동 전 화		
	○ E-mail				
기 타 참고사항					

4. 수송장비 운행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1) 선박

-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나)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항계획서 1부
 - ②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③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 ④ 선박보험증서(P&I증명서) 사본 1부
 - ⑤ 선원명부 1부
 - ⑥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2) 항공기

-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나)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항계획서 1부
 - ②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⑤ 북한이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한다)

(다)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3) 철도차량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나)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행계획서 1부
- ②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북한이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한다)

(다)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4) 자동차

(가)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나)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운행계획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③ 승무원명부 1부

- ④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 ⑤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한다)

(다)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나.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 (1) 수송장비운행 승인사항 변경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상 직접 작성
- (2) 관련서류 첨부 : 파일작성 또는 스캔후 파일 업로드
 - ① 변경사항 해당서류
- (3)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수송장비운행

수송장비운행 안내

자동차운행

- >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 > 자동차운행결과 보고
- > 자동차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항공기운행

- > 항공기운행승인신청서
-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 항공기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철도운행

- > 철도운행승인신청서
- > 철도운행결과 보고
- > 철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선박운행

- > 선박운행승인신청서
- > 선박운행결과 보고
- > 선박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Home > 수송장비운행 >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5일]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회사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생략)
	대표자 성명	<input type="text"/>	연락처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소재지)	<input type="text"/>		
	신청과	사회문화교류과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송장비운행

수송장비운행 안내

자동차운행

>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 자동차운행결과 보고

> 자동차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항공기운항

>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

> 항공기운항결과 보고

> 항공기운항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철도운행

> 철도운행승인신청서

> 철도운행결과 보고

> 철도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선박운행

> 선박운행승인신청서

> 선박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Home > 수송장비운행 > 자동차운행결과보고

자동차운행결과 보고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동차운행 신청서 승인번호 승인번호선택 운행차량선택 에 대한 결과보고

자동차명칭	<input type="text"/>
운행목적	<input type="text"/>
운행노선	<input type="text"/>

* 구간별 운행일시 및 운행구간

운행구분	구간별 운행일시	
	출발지명(일시)	도착지명(일시)
북->남	출발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도착지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input type="text"/> 시 <input type="text"/> 분

확인

취소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송장비운행

수송장비운행 안내

자동차운행

▶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 자동차운행결과 보고

▶ [자동차운행승인사할
 변경승인신청서](#)

항공기운행

▶ 항공기운행승인신청서

▶ 항공기운행결과 보고

▶ [항공기운행승인사할
 변경승인신청서](#)

철도운행

▶ 철도운행승인신청서

▶ 철도운행결과 보고

▶ [철도운행승인사할
 변경승인신청서](#)

선박운행

▶ 선박운행승인신청서

▶ 선박운행결과 보고

▶ [선박운행승인사할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Home > 수송장비운행 > [자동차운행승인사할변경승인신청서](#)

자동차운행승인사할변경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5일]

* 자동차운행 승인번호 에 대한 변경신청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회사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생략)
	대표자 성명	<input type="text"/>	연락처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팩스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소재지)	<input type="text"/>			
	변경사유	<input type="text"/>			

확인

취소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송장비은행

수송장비은행 안내

- 자동차은행
- > 자동차은행승인신청서
- > 자동차은행결과 보고
- > 자동차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항공기은행

- > 항공기은행승인신청서
- > 항공기은행결과 보고
- > 항공기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철도은행

- > 철도은행승인신청서
- > 철도은행결과 보고
- > 철도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선박은행

- > 선박은행승인신청서
- > 선박은행결과 보고
- > 선박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Home > 수송장비은행 > 선박은행승인신청서

선박은행승인신청서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처리기간 : 10일]

* 신청인민적사항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목적				
선박종류	<input checked="" type="radio"/> 선박 <input type="radio"/> 여객선			
금감서관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금감서관장			
선박명칭1				
선박명칭2				
은행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은행예정노선	출발항구1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출발항구2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경유항구1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경유항구2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도착항구1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도착항구2	코드	항구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은행계획개요				
은행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정기 <input type="radio"/> 부정기			
	<input type="checkbox"/> 회/월			
신청과	남북교역과			

* 선박은행 계획서

은행장비국적1	코드	국적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은행장비국적2	코드	국적명	<input type="checkbox"/> 코드찾기
은행장비톤수1	톤	은행장비톤수2	톤
인원	명		
송화인			
수하인			
출항 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입항 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 승인서 내역

대표자성명			
증명번호(주민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주소			
선박 국적1(영문)			
선박 국적2(영문)			

* 물동량

물동량 품목수	0	개
품목	물동량(TON)	

확인 취소

수송장비은행

수송장비은행 안내

자동차은행

> 자동차은행승인신청서

> 자동차은행결과 보고

> 자동차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항공기은행

> 항공기은행승인신청서

> 항공기은행결과 보고

> 항공기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철도은행

> 철도은행승인신청서

> 철도은행결과 보고

> 철도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선박은행

> 선박은행승인신청서

> 선박은행결과 보고

> 선박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 선박은행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관련서류 첨부

Home > 수송장비은행 > 선박은행결과보고

선박은행결과 보고

열람하시고 계신 내용은 개인정보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박은행 신청서 승인번호		승인번호선택	에 대한 결과보고	
승인번호	<input type="text"/>			
상호	<input type="text"/>			
선박명	<input type="text"/>			
은행경로별 입출항 일시	<input type="text"/>			
* 수송화물				
남한 -> 북한 수송화물 품명 및 물량(톤)				
코드	남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코드	북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수송화물 : 개수 <input type="text" value="0"/>				
품명		물량톤		
북한 -> 남한 수송화물 품명 및 물량(톤)				
코드	남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코드	북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수송화물 : 개수 <input type="text" value="0"/>				
품명		물량톤		
북한 -> 남한 수송화물 품명 및 물량(톤)				
코드	남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코드	북함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코드찾기"/>
수송화물 : 개수 <input type="text" value="0"/>				
품명		물량톤		
탑승인원	승객:	<input type="text"/>	명 승무원:	<input type="text"/>
반입시 수하인	<input type="text"/>			
반출시 송화인	<input type="text"/>			
미운할 사유	<input type="text"/>			

확인

취소

▣ 서류민원 신청 관련 서식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방문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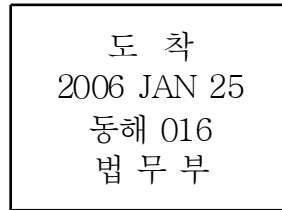
심사확인인(제10조제2항 관련)

(예 시)



(규격 30mm×20mm)

(예 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 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cm		
					cm		
③방문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④방문목적							
⑤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증개인포함)							
⑥방문예정일시 지역 및							
⑦방문및귀환 예정경로							
⑧방문계획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⑨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⑩방문사유 (수시방문신청의 경우에 한함)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하단 참조</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p>							
통일부장관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80g/m²)

첨부서류1. 인적사항

2.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1매 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이다.)
4.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1호의2서식]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사 진 3.5cm×4.5cm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재외국민)			동반자녀 사 진 2.5cm×3cm
성 별			동반자녀 사 진 2.5cm×3cm
본 적			
주 소			
직 장명			
소 재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대폰		
신 장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가입 단체명		
	직 책		
	군 별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80g/m²)

[별지 제2호의2호서식]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성 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방 문 목 적				
②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③연 장 사 유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방문유효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복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80g/m²)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 운행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15일
------	-----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⑤ 송화인
		(인)	⑥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타()
			금 액
③ 원산지	결제기간		
④ 선적항	⑦ 가격조건		
⑧ HS부호	⑨ 품목 및 규격	⑩ 단위 및 수량	⑪ 단가
⑫ 금액			
⑬ 승인조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인번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첨부서류: 뒷 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p>			

32313-053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대 북 한 반 출 승 인 신 청 서

(용)

처리기간

15일

① 반출자(상호주소 ·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⑥ 수 취 인
(인)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 ·성명·전화)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원 산 지	금 액		
④ 선 적 항	결 제 기 간		
⑤ 도 착 항	⑧ 가격조건		
⑨ HS부호 :	⑩ 품 명 및 규 격	⑪ 단 위 및 수 량	⑫ 단 가 : ⑬ 금 액
⑭ 승 인 조 건			
⑮ 승인유효기간			
⑯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 면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통 일 부 장 관 </div>			

32313-054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80g/m²

- 첨부서류 : 1.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①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첨부서류 : 1. 반출·반입계약서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2.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 북한물품반출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상호·주소 ·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② 변경전 승인일자
			③ 변경전 승인번호
			④ 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 승 인 조 건			
⑦ 승인유효기간			
⑧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하단 참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div>			

32313-05611민
99.6.30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첨부서류 : 1. 변경계약서
2.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수송 장비 운행 결과 보고서

승인번호	상호(명칭)	수송장비 종 류	수송장비 명 칭	운행일	운행노선	적재량 (여객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부록 2>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47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47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9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1
4.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184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186
6.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196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206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211
9.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225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33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40
12. 남북협력기금법	244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48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254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256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285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316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16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24
3. 남북해운 합의서	332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340

□ 남북교역 관련 법규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1998. 9. 16 법률 제5559호(외국인투자촉진법)
- 2000. 12. 29 법률 제6316호(대외무역법)
- 2005. 5. 31 법률 제7539호(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횡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③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7.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역사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10.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1.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제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8호
- 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43호

제1 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관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
6. 기타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조의2(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 조(수당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인 위원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 조(준용규정 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삭 제>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 른시행령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이하 “북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갈색

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 북한방문증명서 : 4면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 10면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한방문증명서(이하 “남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청남색

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남한방문증명서 : 4면

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남한방문증명서 : 10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수시 남한방문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⑥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방문을 승인하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는 이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 및 외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재외국민은 방문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인적사항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1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 제>

제12조의3(북한을 수시 방문하는 자의 신고의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의 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3조(편의제공)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가 발급 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이를 소지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범위와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2. 인적사항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6. 편지의 접수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접촉신고 유효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신고의 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의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확인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 삭제 >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

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정하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함은 다음 각호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 <삭 제>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 제>

제33조(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그 밖의 취소에 대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의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삭 제>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삭 제>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 른시행령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
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
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
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행의 상업상·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영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바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통계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한간에 이동하는 인원물품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기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

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 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5.11.30>

이 영은 2005.12.1부터 시행한다.

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 률시행령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제3항관련)

구분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1	법 제9조제3항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자	300만원 이하
2	법 제9조제5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 국민	3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2항	교역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5	법 제18조제2항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총리령 제371호 1990.11. 9
개정 총리령 제384호 1991. 3.27
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통일부령 제13호 2002. 3. 4
통일부령 제32호 2005.11.30

제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 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 <삭 제>

제4 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 른시행 규칙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 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1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 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 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 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 조(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신고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

호서식에 의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11.30>

이 규칙은 2005.12.1부터 시행한다.

4.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개정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2005. 9. 30 통일부고시 제2005-8호

제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 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 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 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물품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6 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 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 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및 별지 생략>

5. 남북한왕래자유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 개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98. 10. 26 관세청고시 제98-59호
 개정 1999. 5. 27 관세청고시 제99-22호
 개정 2002. 3. 28 관세청고시 제02-16호
 개정 2002. 12. 10 관세청고시 제02-43호
 개정 2005. 6. 3 관세청고시 제05-1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유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 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7.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8. 앵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5. 남북한왕래자유제품통관에관한고시

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 ② 당해연도에 5회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7조제1항의 입경횟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 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통관

제 6 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①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한다.

제 7 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면제금액 등) ①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 면제하되, 당해연도 4회차 입경까지 허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빈번입경자에 대해 당해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 4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 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

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 8 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호에 계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켈런 200개비, 엽켈런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 (별표 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 (별표 2)

2. <삭 제>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 물품

4. 기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
시에서 정하는 물품

③ <삭 제>

제10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유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
북한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9조에서 규정한 반·출입 규제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계기된 물품의 통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에 계기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물품
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물품은 관계기
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반출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
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② <삭 제>

제 4 장 출경절차

제12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 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 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반출 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 수단 등
4.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제13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남북한 왕래자승무원은 출경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경하는 때에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휴대반출하여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승무원 휴대품 및 체류물품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체류물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6. 8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왕래자 개인정보 카드 및 카드인식시스템이 구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삭 제>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남북왕래자 휴대품신고서” (계재생략)

[별지 제3호 서식]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계재생략)

6. 반출·반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1999. 8. 16	통일부고시 제99-2호
	2000. 9. 28	통일부고시 제2000-1호
	2001.12. 31	통일부고시 제2001-6호
	2002.10. 24	통일부고시 제2002-2호
	2003.12. 22	통일부고시 제2003-5호
	2004. 7. 8	통일부고시 제2004-5호
	2004.12. 30	통일부고시 제2004-9호
	2005. 3. 23	통일부고시 제2005-5호
	2005.10. 31	통일부고시 제2005-11호

제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 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4 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5 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6 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2005.10.31 >

이 고시는 2005.12.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5-30-1000	건조어류피렛트(명태포)
21	0305-59-3000	건명태(복어)
22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매년 7.1-8.30 반입제한
23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24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5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매년 7.1-8.30 반입제한
26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27	0307-29-1000	가리비(냉동)
28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9	0307-49-1020	오징어(냉동)
30	0307-59-1020	낙지(냉동)

6.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한 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1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2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3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4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6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7	0402-91-1000	무당연유
38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9	0402-99-1000	가당연유
40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41	0403-90-1000	버터밀크
42	0404-10-1010	유장분말
43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4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5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6	0409-00-0000	천연꿀
47	0410-00-3000	로얄제리
48	0701-10-0000	감자(종자용)
49	0507-90-1110	녹용전지
50	0507-90-1190	녹용기타
51	0507-90-1200	녹각
52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53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4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냉장)
55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6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7	0710-80-2000	마늘(냉동)
58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9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60	0712-20-0000	양파(건조)

6.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1	0811-90-1000	냉동밥
62	0811-90-2000	냉동대추
63	0811-90-3000	냉동잣
64	0811-90-9090	냉동호두
65	0712-90-1000	마늘(건조)
66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67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68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9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70	0714-20-1000	고구마(신선)
71	0714-20-2000	고구마(건조)
72	0714-20-3000	고구마(냉장)
73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74	0714-90-9090	서류(기타)
75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76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77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8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9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80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81	0810-90-3000	대추(신선)
82	0813-40-2000	대추(건조)
83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84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5	0910-10-0000	생강
86	1003-00-9010	겉보리
87	1003-00-9020	쌀보리
88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9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90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6. 반출·반입 승인 대상물 품 및 승인절차에관 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91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92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93	1006-10-0000	벼
94	1006-20-1000	메현미
95	1006-20-2000	찰현미
96	1006-30-1000	맷쌀
97	1006-30-2000	찰쌀
98	1006-40-0000	쇄미
99	1007-00-1000	수수(종자용)
100	1008-10-0000	메밀
101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02	1102-30-0000	쌀가루
103	1102-90-1000	보리가루
104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5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7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8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9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10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1	1103-20-1000	밀(펠리트)
112	1103-20-2000	쌀(펠리트)
113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4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15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6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7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8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9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6.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21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22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23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4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5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6	1108-11-0000	밀 전분
127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8	1108-13-0000	감자 전분
129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30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31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2	1108-20-0000	이눌린
133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34	1201-00-9000	대두(기타)
135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6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7	1207-40-0000	참깨
138	1207-99-1000	들깨
139	1211-20-1100	수삼
140	1211-20-1210	백삼(본삼)
141	1211-20-1220	백삼(미삼)
142	1211-20-1240	백삼(잡삼)
143	1211-20-1310	홍삼(본삼)
144	1211-20-1320	홍삼(미삼)
145	1211-20-1330	홍삼(잡삼)
146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7	1211-20-2210	홍삼분
148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9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50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6.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1	1211-20-9200	인삼종자
152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53	1213-00-0000	곡물의 질과 껍질(벼짚에 한함)
154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5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과 베일 이외)
156	1302-19-1110	인삼정(백삼)
157	1302-19-1210	홍삼엑스
158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9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6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1	1702-11-1000	유당
162	1702-19-1000	기타 유당
163	1702-90-1000	인조꿀
164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5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6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7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8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9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70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71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2	1902-19-2000	당면
173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74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5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6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7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8	2103-90-1030	고추장

6.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고시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79	2103-90-9030	혼합조미료
180	2103-90-9040	매주
181	2103-90-9090	혼합조미, 조제품 기타
182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83	2106-90-3021	홍삼차
184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5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6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7	3505-10-3000	배소전분
188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89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90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1	3505-20-1000	전분 글루
192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93	3505-20-9000	기타 글루
194	5004-00-0000	견사
195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96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2005. 6. 13. 통일부고시 제2005-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합자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박운항승인의 신청)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선박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

증 사본 1부

- 4. 선박보험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 5. 선원명부 1부
- 6.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 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운항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 조(항공기운항승인의 신청)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운항계획서 1부
- 2.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 3. 승무원명부 1부
- 4.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5.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비행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 조(철도차량운행승인의 신청)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운행계획서 1부

2.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구간,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운행승인의 신청)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노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및 제6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

여 운행승인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행승인기준) ①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신청서의 제출서류 등이 영 제43조의 운행의 승인기준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기관과 체결되어야 할 것
2.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제11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선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항공기는 별지 제8호서식, 철도차량은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은행승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은행승인유효기간) ① 은행승인유효기간은 은행목적의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정한다.

1. 정기은행 : 2년
2. 부정기은행 : 1년

② 은행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송장비 은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당해 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은행결과의 보고)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의 은행승인을 받은 자가 은행한 때에는 부정기은행은 은행후 7일 이내, 정기은행은 은행후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장비은행결과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은행승인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 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4-1호)
2. 남북한간선박은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1-5호)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고시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6. 6. 19 관세청고시 제96-41호
개정 2001. 1. 12 관세청고시 제01-1호
개정 2001. 5. 29 관세청고시 제01-24호
개정 2003. 9. 25 관세청고시 제03-3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에 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합의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

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반입절차)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 등) ①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

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 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준용)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① 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해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 ①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통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장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당해물품

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간내에 확인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고일자는 당초 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가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 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 4 장 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

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기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과 재발급표시를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기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기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예시 : 재발급 2003.10.10)

⑦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은 최초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타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외 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원산지확인기준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8. 남북교역 물품통관관리 에 관한 고시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제23조(원산지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남한 또는 북한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 번호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 이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범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27조(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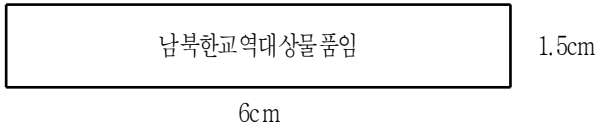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범칙 등의 조사의뢰(즉시)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시 제11조 관련)



9.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고시

제정 2003. 9. 29 통일부고시 제2003-4호

개정 2005. 3. 23 통일부고시 제2005-6호

제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 및 남북사이에서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4 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 조(원산지 판정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 조(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 조(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8 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제9 조(원산지 확인기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 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9. 남북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② 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5.3.23>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s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Other information) 인 Stamp ○		상기 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 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발급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 이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297mm

* 북측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 증명서

번호 _____

날 자 주체 년 월 일

(2006)

관	매	자	_____			
구	매	자	_____			
품		명	_____			
수	량	/	중	량	_____	
포	장	/	표	식	_____	
제	품	생	산	자	_____	
제	품	생	산	장	소	_____
수	송	수	단	_____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급장소 :

10.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2005.10. 31 통일부고시 제2005-9호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가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 중 통 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 제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법 제16조제1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규모·투자비용, 자금 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 조(수시방문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

건을 정하여 수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문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삭 제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방문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3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삭 제

제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 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환경관리 계획
 - 바.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 (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마. 회사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 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설 99-528>

1. 제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1,000만 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칙 및 별표 생략>

11.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2005.10. 31 통일부고시 제2005-10호

제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업무

제3 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 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5 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 조 <삭 제>

제7 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 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북한방문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재원은 방문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2.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용자특별회계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 2002.12.30 법률 제6836호 (국고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 조(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 조 <삭 제>

제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삭 제>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경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국고금관리법시행령)
- 2005.12.14 대통령령 제1918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 제>

제4조 <삭 제>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 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 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

을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

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3.27총 리 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2003. 2. 6 통일부령 제17호
2004. 5.14 통일부령 제22호

제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
- 5의2.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5억원 이상
 -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이상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6.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5억원 미만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미만

<부칙 생략>

15.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4.17 통일원고시 제1991-1호
개정 1998.5.12 통일부고시 제1998-1호
1998.12.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1999.10.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2003.2. 6 통일부고시 제2003-1호
2004.1.28 통일부고시 제2004-1호
2005.1.31 통일부고시 제2005-3호

제1 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2 장 기금의 관리

제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 제8 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장 무상 지원

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

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 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 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 제>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1절 손실보조의 대상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마.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 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6조의1(담보하는 위험) 제26조의 손실보조 대상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3. 제26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 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이내로 한다.

제2절 손실보조 약정체결

제29조(약정체결한도)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 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

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 5억원
-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20억원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30조(약정대상거래) ① 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약정 신청자 등) ① 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가.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나.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구비할 것

② 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약정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제32조의1(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약정가액과 약정금액) ① 손실보조약정가액(이하 “약정가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 “약정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3(손실보조비율) 제3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약정체결 방법) ① 약정체결은 개별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품목별로 포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약정은 기금과 약정신청자가 손실보조 대상거래를 정하여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약정체결하고 기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승인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33조(손실보조수수료)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다.

② 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약정의 효력) ① 약정의 효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

(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약정의 내용변경) ① 피약정자가 약정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약정변경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선적금액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받는 즉시 약정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손실보조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보조수수료의 환급) ① 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손실보조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

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보조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 절 손실보조금 지급

제38조(사고발생통지 등) ① 피약정자는 약정기간중 제26조 내지 제26조의1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경과후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9조의1(사고조사의 실시) 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시 피약정자 및 북한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원인,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사고조사는 서류조사, 현지 출장조사,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

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손실액의 계산) 손실액의 계산은 발생한 손실액에서 사고발생후 피약정자가 손실경감조치, 전매,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또는 이로 인한 손실경감액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3(지급심사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발생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손실액계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2. 피약정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거래관계 심사 : 약관의 준수 여부(법령위반 포함), 거래계약서의 이행여부, 합리적인 손실경감조치 시행여부, 계약당사자간의 거래관계(거래의 진위 포함) 등
3. 손실액 계산내용
4. 지급판정에 관한 제안 및 필요조치
5. 기타 지급판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손실보조금 지급) ①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에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내로 하며 약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손실보조금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 결정 통보후, 1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거나 사고확정에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면책) ① 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약정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
2. 피약정자의 과실, 약관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
3. 피약정자의 약정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제43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 아래 각호 1의 사유로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

금의 일부를 가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손실보조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 4 절 사후관리

제45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피약정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정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의 방지·경감 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약정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회수의무) ① 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약정자로 하여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제47조(대위권) ①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9조(회수금의 납부) ① 피약정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지연배상금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제51조(이의 신청) ① 통일부장관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고거래의 종결)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 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거래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1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53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5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6조(대출절차)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57조(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출금 상환) ①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대출의 대상, 제54조의 대출비율, 제55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60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61조(결과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 무 보 증

제62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63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64조(보증절차)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65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66조(손실보전 신청등) ① 금융기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67조(보전이자율등)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8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9조(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 신청서 1부를,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70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71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제72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74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7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출연)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79조(대손충당금) ① 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

16. 남북경 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1999.10.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개정 2000.11.21 통일부고시 제2000-2호
 2001.12.31 통일부고시 제2001-3호
 2003. 2. 6 통일부고시 제2003-2호
 2004.1.28 통일부고시 제2004-2호
 2005.1.31 통일부고시 제2005-2호

제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및 제7장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

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채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채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14. “채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5.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개성공업지구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제3 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 조(대출표시통화) ① 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 조(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 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경제협력사업대출

가. 투자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관련 대출 : 승인권자가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제 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 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

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8조(채권보전) ①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① 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② 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으로 제작 또는 구매되는 반출 또는 반입목적물, 해당 반출입계약서에서 정한 차주의 권리 또는 수익금, 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실적한도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외취급) ① 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

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 5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면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지원대상

제12조(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제13조(우선지원대상)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7.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4조(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제재조치 이행완료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나. 대외무역법

다. 관세법

라. 외국환거래법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6.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을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3절 신용대출

제1관 통칙

제15조(신용대출 대상)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제16조(신용대출한도 관리) ① 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

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 2 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제 1 목 단기 반출·반입거래에 대한 특례

제17조(적용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것
 - 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기업신용등급 :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재무등급이 6등급 이상

제18조(신용대출한도)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잔액은 기금의 이익적립금 범위내로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연간 취급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표의 차주별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30억원 이내로 한다.

재 무 등 급	차주별 신용한도
1등급 ~ 2등급	순자산의 60%
3등급 ~ 4등급	순자산의 40%
5등급 ~ 6등급	순자산의 20%

③ 제2항의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관리한다.

제19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채권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리규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때 재무등급을 기업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제 2 목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제20조(적용범위) 이 목에서 규정하는 특례의 적용범위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적한도대출과 관련하여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침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적용요건) ①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북한소재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나. 1년 이상의 대북사업 경험을 구비할 것(원부자재 반출거래에만 적용)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해당자산이 북한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2조(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범위) 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비율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 차주 순자산의 70%
2. 기업신용등급 P6 : 차주 순자산의 60%
3. 기업신용등급 SM : 차주 순자산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담보자산으로 의제하여 취급한다.

제23조(대출취급방법)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자금별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취급하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 첨담보로 취득하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출이자율 결정시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취급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에 준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반출 실적한도대출을 신청하면서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첨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비율을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범위내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포함한 국내외 원부자재에 대하여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
2.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출기간을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설정할 것

제24조(북한소재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기금수탁관리자의 북한소재 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목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한 특례

제25조(적용요건)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이상일 것
 3. 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 제26조(신용취급한도)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5천만원 미만으로 하되,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이 SM인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잔액합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된 신용대출부분은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제2 장 경제협력사업 대출

제1 절 통 칙

제27조(대출종류)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
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
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이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
4.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
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제28조(집행방법) ① 대출금은 소요시기별로 분할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집행 또는 일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자기자금과 대출금의 분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상환방법) ①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 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

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

3.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제30조(사업성 검토 등 의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신청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제 2 절 투자자금대출

제31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소요자금 산정)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

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
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② 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신청일 현재 기지출 비용.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2.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
3.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
4.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제33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34조(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운전자금대출

제35조(대출요건)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다음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소액의 개보수투자시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기업신용등급	대출한도
P1 ~ P2	1회전 운전자금 × 120% 이내
P3 ~ P4	1회전 운전자금 × 110% 이내
기 타	1회전 운전자금 × 100% 이내

제37조(1회전 운전자금)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38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9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차주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차주의 신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 절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제40조(대출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 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
 - 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
 - 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제41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42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환토록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
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43조(집행절차) 대출금은 대금납입시기에 따라 집행하되, 차주로부터 자

기자금 송금사실을 확인한 후 분양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 절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44조(대출요건) ①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 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
 - 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 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

제45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제46조(대출조건) ① 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② 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47조(지원방침의 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의 지원방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8조(채권보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
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권리에 대한 담보 취득
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는 협약서 취득
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보장 또는 협약서
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세부 취급사항) 통일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절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제50조(취급요건)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할 것
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
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4이상이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3배 범위내일 것

나.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대비 1/2 이상일 것

다.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기술인력의 확보, 합작 파트너의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라. 공사기간중의 신용취급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양호한 자가 연대입보할 것.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대출금액)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52조(담보의제) ① 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② 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한다.

제53조(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① 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③ 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대출이자율 조정) 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② 대출이자율 조정시 적용되는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가산율은 당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대출이자율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 조정된 대출이자율은 공사완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징수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5조(집행절차) ①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8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집행액이 대출승인액의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현장점검 및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를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기업신용등급이 P4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56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금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제57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59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범위내로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3. 유희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제60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1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실적한도대출

제62조(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3조(대출금액) ① 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80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6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6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제64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는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대출승인신청 직전년도에의 연간 반출입실적 합계
2.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반출 :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
2. 반입 :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 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65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 제66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 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 ② 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 ③ 재대출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7조(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등을 중복 수혜받을 수 없다.

제 4 장 협조대출제도

제68조(취급원칙) ① 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69조(채무보증) ① 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 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취급절차)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

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사후관리)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 1 절 관리업무

제72조(관리업무) ① 사업진행상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2. 동태점검
3. 약정관리
4. 담보관리
5. 상시관찰기업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대출금 사용확인) 대출금 집행후에는 차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4조(사업진행상황 조사) ①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5조(동태점검) ① 기업신용등급이 P4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시관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
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
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대악재 보도 등
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
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등

제76조(약정관리) ① 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

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 서면으로 약정 이행 촉구
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77조(담보관리) ① 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연 1회 이상
2. 기타 담보 :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상시관찰기업) ① 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75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기업

② 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기타

제79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 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0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 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 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5. 1.31 >

제1 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 남북교역 관련 합의서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채택

2003. 8. 20 발효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 3 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 4 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 5 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 6 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8 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 9 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관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관정부가 정한다.

제 12 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관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 13 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 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 14 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 17 조 조 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8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 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 19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1.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성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 10. 12 채택

2005. 8. 1 발효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 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 2 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4 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 8 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 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11 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 12 조 통 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 14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판정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3. 남북해운 합의서

2004. 5. 28 채택

2005. 8. 1 발효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

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 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9 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 10 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 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

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 13 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 15 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3. 남북해운 합의서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	해상수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임차	용선
어획물	물고기
소지	소유
해사당국	해운당국
통관	통과
해역	수역
항행경보	항해경보
하역	상하선
용역	봉사
해양사고	해상재난
전복	침몰
보호조치	구원조치
방제	제거
구조구난	구조
무사귀환	안전송환
대리점	대리인
관행	관례
준용	적용
교류협력	협력

4.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 7. 31 채택

2003. 9. 29 발효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 3 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 4 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 5 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 6 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7 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9 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0 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록 3>

■ 남북교역의 역사

일 자	주 요 내 용
'88. 7. 7	· 「7·7선언」 발표
'88.11.14	· 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점, 104천불)
'89. 1.26	· 최초 반입통관(효성물산, 전기동 200톤, 660천불)
'89. 6.1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89. 2. 4	· 최초 반출승인(현대상사, 잠바 5,000벌, 69천불)
'90. 8. 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 「교류협력기금법」 제정
'90. 8.13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90. 8.31	·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및 반출입요령」 제정(관세청)
'90. 9.25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90. 9. 4 ~ '92. 9.18	· 제1~8차 남북고위급 회담
'91. 5. 6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미술품·우표·화폐 등을 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
'91. 7. 1	· 교류협력국 창설 · 반출입승인 1억불 돌파(반입 105백만불, 반출 12백만불)
'91.12.10 ~ 12.13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제5차 고위급회담)
'92. 1.16 1.26	· 대우 김우중 회장 북한방문
'92. 9.17 9.18	· 「3개 부속합의서」 채택(제8차 고위급회담)
'92. 9	· 최초 위탁가공교역(코오롱상사, 셔츠 6,216벌, 38천불 반입)
'92.10. 5	·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93. 3.12	· 북한 NPT 탈퇴선언
'93. 3.19	· 이인모 송환
'93. 7	· 반출·입승인신청서류 간소화(재무제표 등 참고자료 제출 생략)

일 자	주 요 내 용
'94. 2. 5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관세청)
'94. 6.20	·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94.12.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승인절차 명시
'94.12.31	· 반출입 통관누계 7억불 기록
'95. 1. 3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WTO체제 출범 관련 품목구분
'95. 4	·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제정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 1	· 남북교역 상담창구 확대 - 무역협회 부산지부 등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 개설
'95. 5.17	·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95. 6.25 ~10. 7	· 쌀 15만톤 대북 지원
'95.12.31	· 반출입 교역규모 연 2억불 돌파
'95.12.15	·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6. 1.26	· 최초 합영회사 설립(대우 ↔ 민족산업총회사)
'96. 3. 5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HSK분류표 개정에 따른 품목개정
'96. 5.13	· LG 대북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 첫반입
'96. 7. 6	· 대우 기술자 최초 방북승인
'97. 1.15	· 소형선박(2,000톤급 미만)의 인천항 입항금지조치 해제
'97. 4. 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절차 폐지에 따른 절차 변경 등
'97. 7.10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항 승인 절차 간소화
'97. 9.13	· 북한 영공개방 합의
'97.12.31	· 남북교역 규모 연 3억불 돌파(누계 15억5천만불)
'98. 1.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남북교역의 직교역화 및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추진
'98. 2.25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대통령 취임사)
'98. 3. 2	· 최초 평양 FIR 통과항로 시범운항(대한항공)

일 자	주 요 내 용
'98. 4.23	· 대구/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등
'98. 6.16 ~ 6.23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방문 - 한우 500두, 차량 50대 반출('98년말 현재 한우 1,001두, 차량 100대 반출)
'98. 6.19	· 『남북한교역대상물 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개정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205개 → 178개) 등
'98.11.17	· 금강산 관광 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98.11.18	· 금강산 관광선 첫 취항('98년말 현재 23회운항, 10,544명 관광)
'98.12.31	· 『남북교류협력에관 한법률시 행령』 및 『남북 한왕래자의휴대금지 품및처리 방법고시』 개정 - 교류협력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99. 2. 4	· 판문점 임시 세관검사 및 출입심사 사무소 설치 (남북회담사무국 전방사무소)
'99. 2. 4 ~ 2. 6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7명 판문점 경유 왕래 - 차량(다이내스티 1대) 반출확인 및 휴대품 검사 출입심사
'99. 3. 9 ~ 3.11	· 정주영 명예회장 등 일행 5명 남북왕래
'99. 5.18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통신 회선 증설(2회선, 총 8회선)
'99. 6.10	· 교류협력국 교류3과를 교역과로 개칭 -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승인업무는 협력사업 주관과로 이관 - 인도지원물자 반출입승인업무는 인도지원국으로 이관
'99. 8.16	· 『남북한교역대상물 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78 → 182개)
'99.10.27	· 『남북경제 교류협력 에대한남북협력기 금지원지침』 제정 - 대북투자, 교역·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마련
'99.12.15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승인

일 자	주 요 내 용
2000. 1. 7	·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설립 승인
2000. 3.13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사업 승인
2000. 4.28	· 『남북위탁가공교역협의회』 창립
2000. 6.13 ~ 6.15	·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경제협력 등 5개분야 합의(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7.24	· KEDO 사업 지원용 통신 2회선 증설(총 10회선)
2000. 8.11	·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간에 광케이블 설치
2000. 8.15 ~ 8.18	·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각 100명)
2000. 8.22	· 현대아산 개성공단 조성 합의서 체결
2000. 9.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0. 9.22 ~ 9.28	·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백두산)
2000. 9.26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2000. 9.2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2→185개)
2000.12.16	· 『남북한 4대 경협 합의서』 채택
2001.10.31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방북유효기간 1년→3년 연장 등)
2001.12.3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반출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조정(185→186개)
2001.12.31	·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2002. 9.18	· 경의선, 동해선 동시 착공식 개최
2003. 5.19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쌀차관 40만톤

일 자	주 요 내 용
2003. 6.14	· 경의산-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행사 진행
2003. 7.31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3. 8.20	· 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3. 9.29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발효 ·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 제정
2003. 12.24	· 남북출입사무소 개소(도라산-고성)
2004.1.29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4. 4.22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2004합의서 채택
2004. 6.30	·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 8천평에 대한 준공식 개최
2004.10.20	·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 착공식
2004.12.1	· 동해선 남북연결 본도로 이용시작 및 도로이용 대상 확대
2004.12.15	· 개성공단 첫 제품생산 기념식
2005.3.23	·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 관한고시 개정 -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의 특례 등
2005.5.3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시행 12.1) -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
2005.6.13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 운행승인의 신청서류 및 승인기준 등
2005.8.1	·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합의서 발효
2005.8.12	· 남북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2005.10.3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시행 12.1) - 제명을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 관한고시』 -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간소화 등
2005.10.28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2005.12.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상 담 안 내

남북교역에 관한 문의상담은 통일부(남북교역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남북교역과)

-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1호
- 전 화 : 02)2100-5881~6
- F A X : 02)722-8911
-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통일부)
<http://inter-korea.unikorea.go.kr>(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동북아팀)

- 주 소 : (137-170) 서울 서초구 압곡동 300-9
- 전 화 : 02)3460-7413
- F A X : 02)3460-7938
- 홈페이지 : www.kotr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남북협력지원실)

- 주 소 :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전 화 : 02)769-6861 ~ 4
- F A X : 02)769-6866
- 홈페이지 : www.sbc.or.kr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치	전 화
부 산 지 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051)630-7400
울 산 지 부	울산시 남구 무거동	052)277-3281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북구 산격동	053)601-5300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032)450-0500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062)600-3000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042)866-0114
경 기 지 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31)259-7900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031)920-6700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43)230-6800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063)213-2130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두대동	055)212-1350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33)256-9611/3
강 릉 지 부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033)646-9967/8
제 주 지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064)751-2055 ~ 7

☞ 한국무역협회(남북교역팀)

- ▣ 주 소 :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 ▣ 전 화 : 02)6000-5242 ~ 5
- ▣ F A X : 02)6000-5328
- ▣ 홈페이지 : interkoreatrade.kita.net
- ▣ 지방상담창구

구 분	위 치	전 화
부 산 지 부	부산시 중구 중앙동	051)993-3300 ~ 5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053)753-7531 ~ 3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062)943-9400 ~ 3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	042)864-4620 ~ 2
인 천 지 부	인천시 남구 주안6동	032)420-0011 ~ 3
강 원 지 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033)256-3067 ~ 8
충 북 지 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043)236-1171 ~ 3
경 남 지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055)282-4115 ~ 6
전 북 지 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063)214-6991 ~ 2
경 기 지 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31)259-7850 ~ 3
울 산 지 부	울산시 북구 연암동	052)287-3060 ~ 1

* 남북교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안내책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상담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5년 12월 일 인쇄

2005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

TEL. 02)2100-5881 ~ 6

FAX. 02)722-8911

인쇄처 : 웃고문화사

TEL. 02)2267-3956

FAX. 02)2268-2361

【비매품】